

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518호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 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14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융자금의 금리는 연 2.3%로 한다.”를 “대출금리는 시중 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p>제33조(용자의 한도 및 조건)</p> <p>① (생   략)</p> <p>② <u>용자금의 금리는 연 2.3%로 한다.</u> 다만,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.</p> <p>③ (생   략)</p>	<p>제33조(용자의 한도 및 조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